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70년 이상 장기 균형 유지 및 보험료율 인상 〉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525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70년 이상 장기 균형 유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수립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5
다. 관계 기관 의견	7
2. 연금보험료율 인상	8
가. 개정안의 내용	8
나. 검토의견	9
다. 관계 기관 의견	10

I. 개요

1.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52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안상훈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 15.
- (3) 회 부 일 : 2025. 1.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모호한 법조항으로 인해 재정적 지속가능성 관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장기’를 70년 이상의 기간으로 명확히 하고, 장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재 국민연금은 2041년 수지적자가 시작되어 2056년 기금소진 예정으로, 현 20-30대 청년들은 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급격한 보험료 상승을 부담해야 함. 실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9%)은 OECD 주요국 평균 보험료율인 18.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소득대체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이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여 연금 재정 위기의 급한 불씨를 끄는 동시에, 다음 연금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및 제88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70년 이상 장기 균형 유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수립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 제4조제1항¹⁾에 따른 ‘장기’의 의미를 ‘70년 이상’으로 정의하면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수립 목적을 ‘장기 균형 유지’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 균형 유지) ① (생략)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 균형 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계획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새	② ----- ----- ----- ----- <u>제1항에 따른 장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u> ---- ----- ----- ----- ----- ----- ----- -----

1)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 균형 유지) ① 이 법에 따른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調整)되어야 한다.

현행	개정안
로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 설> ③ (생략)	----- ----- -----. ③ 제1항에 따른 장기는 70년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 균형 유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보건복지부장관은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이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여왔음.²⁾

- 최근의 재정계산은 2023년 3월 발표된 ‘제5차 재정계산’으로, 국민연금기금은 2041년경 수지 적자 전환 후 2055년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었음.³⁾

□ 한편 각 재정계산의 재정추계기간은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의 장기적인 재무구조를 관찰할 수 있으면서도 추계모형과 인구·경제 등 입력변수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한 예측의 정확성과 유용성 간 균형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제1차 재정계산(2003)⁴⁾을 제외하고는 모두 ‘70년’으로 설정되었고,

제5차 재정계산(2023)에서는 재정추계기간의 마지막 연도인 2093년을 기준으로 ‘수지 적자 미발생’ 또는 ‘적립배율⁵⁾ 유지 또는 제고’ 등 재정안정을 위한 필요보험료율을 산정하였으며, 보험료율 이외 변수의 변동을 반영한 시나리오별 전망을 함께 제시하였음.

2)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다만, 정부는 2024년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1년 늦추어진 2056년경으로 수정 전망하였음.

4) 제1차 재정계산(2003)에서는 2003년부터 2070년까지 67년간을 재정추계기간으로 설정하였음.

5) ‘적립배율’이란 해당연도 총지출 대비 연초 적립금을 의미함.

-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수급개시연령 등 다른 변수는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2093년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2025년에 보험료율을 17.9%로 인상하여야 하고, 그 인상 시점이 10년 늦추어져 2035년이 되면 20.7%까지 보험료율을 인상하여야 한다는 전망이 제시되었음.

< 제5차 재정계산: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보험료율 >

보험료율 인상시점		【 재정추계기간 마지막 연도('93년) 기준 재정목표 시나리오 】				
		적립배율 1배	적립배율 2배	적립배율 5배	수지적자 미발생	마지막 20년간 적립배율 유지 (적립배율)
제5차 (2023)	'25년	17.9%	18.1%	18.7%	19.6%	20.8% (14.8)
	'35년	20.7%	21.0%	21.9%	22.5%	23.7% (11.7)
제4차 (2018)	'20년	16.0%	16.3%	17.1%	18.2%	20.2% (17.3)
	'30년	18.0%	18.3%	19.3%	20.2%	22.2% (14.0)

자료: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결과』, 2023. 3.

□ 개정안은 「국민연금법」 제4조제1항6)에 따른 ‘장기’의 의미를 ‘70년 이상’으로 정의하면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수립 목적을 ‘장기 균형 유지’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간 ‘70년’을 재정추계기간으로 삼아 재정계산을 실시하여온 실재를 반영하는 동시에 현행 제도 유지 시 2056년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려는 방안으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6)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① 이 법에 따른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調整)되어야 한다.

□ 그런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 ②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③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이므로,

안 제4조제2항에서 ‘장기 균형 유지’를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의 수립 목적에 한정하는 대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목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현재 재정추계는 ‘20세 가입-90세 사망’의 생애주기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장기 시계의 관점에서 ‘70년’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의 수지불균형 구조 하에서 70년 이상 장기 균형을 유지하려면 급격한 재정안정조치가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방향의 설정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하고, 연금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연금보험료율 인상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2025년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일시에 4%p 인상하여 2026년부터 13%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8조).

현행	개정안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생략)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u>45</u>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 ----- ----- ----- <u>65</u> 에-----.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u>90</u> 으로 한다.	④ ----- ----- ----- ----- ----- <u>130</u> 으로-----.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기준소득월액⁷⁾ 대비 연금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비율로,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험료율은 9%(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임.
- 정부가 2023년 3월 발표한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2041년경 수지 적자 전환 후 2055년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어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된 측면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일시에 4%p 인상하여 2026년부터 13%가 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포함된 기금투자수익률 연평균 5.5% 달성 방안을 전제로 개정안에 따른 국민연금 적자 전환 시점과 소진 시점을 각각 2057년과 2076년으로 추계하였음.
- 다만,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일시에 인상하려는 것으로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려는 목적에서는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 방안보다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7)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른 보험료율의 인상률은 약 44.4%이므로 가입자의 가처분소득이나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재정적 지속가능성 관리를 위하여 보험료율을 인상하여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그 수준은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개편 논의와 연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고,

개정안과 같이 보험료율을 일시에 인상하게 되면 재정안정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가입자 부담 증가 및 고용시장에 대한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10